

2000. 6. 28(水)
제62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總 務 委 員 會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6. 8. 제 천 시 장
- 나. 회 부 일 자 : 2000. 6. 8.
- 다. 상 정 일 자 : 2000. 6. 12. (제62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지선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추가 및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추 가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중 7등급을 추가(종전 1급에서 6급까지)
- 개 정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유족과 중상이자

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유족이 소유하는 부분만은 도시계획세 면제를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규적검토

- '99. 8. 31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에 따르면 종전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된 상이등급이 7급까지 확대되었으며, 2000. 3. 27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지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수용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 또한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상이자 단체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제외하는 것 또한 2000. 1. 10일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안이 통보된 관계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갈음되는 바, 저촉사항은 없음.
- 아울러 동 개정 조례안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임으로

2000. 4. 21~5.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던 바, 이의는 없었고,

- 2000. 6. 7일 개최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통과된 사안으로 행정절차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였다 할 것임.

○ 행정적 검토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장 낮은 등급인 7급의 신설로 경미한 상이라 하여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유공자들이 혜택을 보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환영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